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94
----------	------

2017년 9월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7. 맹진영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7. 6. 8.
3.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9월 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맹진영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의료원 같이 서울시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출연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규정이 많이 있음.

- 이에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의 대상 사업에 대한 사항, 정관에 기재할 사항, 임원에 대한 사항, 재산 또는 재원에 대한 사항, 경영실적 등의 평가에 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한편, 그 밖에 법령개정사항에 따른 조례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의료원의 주요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신설).
- 나. 관계법령에 따른 서울의료원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 다. 서울의료원의 임원 중 상근이사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 라.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조성, 기금 및 출연금의 규정,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근거규정을 구체화함(안 제11조부터 안제13조까지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의료원 같이 서울시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출연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다수의 규정이 산재해 있음.
-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의 대상 사업에 대한 사항, 정관에 기재할 사항, 임원에 대한 사항, 재산 또는 재원에 대한 사항, 경영실적 등의 평가에 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한편, 그 밖에 법령개정사항에 따른 조례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가. 일관성

- 동 개정안은 상위법을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바,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법체계 통일성과 조화를 통해 일관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음.

- 예를 들어 서울의료원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현행 조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는 등 일부 오탈자가 있는 바, 개정안은 법령 간 통일성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참고자료 - 관련법령 참조)

〈표〉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정체성

- 서울의료원은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바, 서울시의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공공의료체계로서의 공공성 등 서울의료원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조례는 서울의료원의 사업내용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정체성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서울의료원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서울의료원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겠음.(참고자료 - 관련법령 참조)

- 공공의료체계내 서울의료원의 지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음.

<표>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의료기사 및 서울시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p>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 현행 조례는 제1조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음.

다. 적절성

- 동 조례 개정안은 서울의료원의 정관과 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바,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조례상에 명시하여 조직법정주의를 명확히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음.(참고자료 - 관련법령 참조)

〈표〉 개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3조(임원)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중 상근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p>	<p>제7조(정관)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p>제8조(임원) ① 의료원에는 원장과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p> <p>② 의료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p>③ 의료원의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중 상근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p>

- 이 외에 동 조례 개정안 제12조는 기금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서울의료원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하겠음.(참고자료 - 관련법령 참조)

※ 기금이 설치된다면 기금의 재원이 무엇이 될 지도 의구심 있다 할 것임. 외부의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면 기부금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의료수입의 일부를 사용하여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면 공공의료손실에 대한 보전을 받는 서울의료원이 수입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 일인지 의구심 있다 할 것임.

<표>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2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① 의료원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기금을 들 수 있다.</p> <p>② 시는 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 기금이 설치되는 경우 의회의 예산통제권 약화로 인해 견제 및 감독권 한을 제약받을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집행부는 “동 개정안 제13조는 경영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19조」 등에 의거하여 동 조례 개정안에 경영평가 규정을 넣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을 평가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집행부가 서울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2015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4772,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8421) 당시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1)에 따른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보건복지부의 평가로 갈음하기를 요청하고 있음. 또한 동법동조제2항에서 경영실적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평가의 결과를 서울시가 경영평가에 활용가능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타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가 2015년 발간한 “지방출자출연법/지침해설” 에서도 동법동조를 적용받는 대표적인 예시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들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 집행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하여 서울의료원에 대한 경영 평가를 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음.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 제13조를 신설하는 것이 법률

1)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2.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 그러나 이러한 면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의료원에 대한 평가가 법적인 타당성만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는 의문이라 하겠음. 서울의료원이 서울시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인 만큼 서울시의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서울시가 평가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서울의료원은 서울시가 원하는 각종 공공의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형태의 사업만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집행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의 소지가 높은 방식으로 서울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해 온 것은 적절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서울의료원의 경영평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임.

<표>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관계 전문가·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종합의견

-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적법하게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안건은 그 개정의 사유가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기금과 관련하여 의회의 예산통제권 침해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 법적인 타당성과는 별개로 정책적 타당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일한 이유로 경영평가와 관련하여서 서울의료원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의 양자를 고려한 안건심의회가 필요하다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1894
----------	---------

제안일: 2017년 9월 1일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개정안 제13조 등을 삭제하고 자구 수정 등 입법례에 타당하도록 개정안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지방의료원을 서울의료원으로 수정함(안 제7조).
-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를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삭제함.
- 안 제14조를 제12조로 하고 안 제15조를 제13조로 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지방의료원”을 “서울의료원”으로 한다.

안 제12조를 삭제한다.

안 제13조를 삭제한다.

안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안 제15조를 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조례안
<p>제7조 (수당 등)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이사 및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수당 등) 이사회에 출석하는 <u>비상근이사와 위원회</u>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수당 등) 이사회에 출석하는 <u>비상근이사와 위원회</u>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신 설>	<p>제7조 (정관) ①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p>제7조 (정관) ① 서울의료원 ----- ----- 1~14(개정안과 같음)</p>
<신 설>	<p>제12조 (기금 및 출연금 등) ① 의료원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기금을 둘 수 있다.</p> <p>② 시는 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삭 제>
<신 설>	<p>제13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관계 전문가·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삭 제>

	<p>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p>	
<p>제9조(시민참여위원회) 의료원장은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4조(시민참여위원회) 의료원장은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2조(시민참여위원회)----- ----- ----- ----- -----.</p>
<p>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1. 서울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00만원</p> <p>2. 서울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200만원</p>	<p>제15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1. 서울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00만원</p> <p>2. 서울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200만원</p>	<p>제13조(과태료)----- ----- ----- ----- ----- 1.----- ----- 2.----- ----- -----</p>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임원)”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의료기사 및 서울시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의3제1항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정관)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 1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8조(임원) ① 의료원에는 원장과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의료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의료원의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중 상근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중 “비상근이사 및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근이사와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시행령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의료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2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① 의료원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관계 전문가·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u>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u>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u>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p>	<p>제2조(명칭)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u>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p>
<p>제3조(임원)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중 상근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의료기사 및 서울시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p>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제3조의3(진료과목)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도록 의료원의 진료과목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의3(진료과목) ① 시장-----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업계획 등) ① (생략)</p> <p>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p>	<p>제5조(사업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p>

<p>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 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 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 2. (생략)</p> <p>③ (생략)</p>	<p>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 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 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을 의뢰하는 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제6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 ----- 각 호-----.</p> <p>1. · 2.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7조(정관) 서울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p>제7조 (수당 등)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이사 및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수당 등) ----- 비상근이사와 위원회----- ----- -----.</p>
<p><신 설></p>	<p>제8조(임원) ① 의료원에는 원장과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의료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의료원의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중 상근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p>
<p>제8조 (지도·감독 등) ① (생략)</p> <p>②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0조 (지도·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각 호----- -----.</p>

<p>1. ~ 3. (생략)</p> <p>③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 (생략)</p>	<p>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p>
<p>제10조 (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1.·2. (생략)</p>	<p>제13조 (과태료) ① ----- ----- -. ----- <u>법 시행령 제18조 규정</u> ----- --.</p> <p>1.·2.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의료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p>